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2 발의연월일: 2020. 6. 23.

발 의 자:정청래・양이원영・문정복

이용빈 · 윤미향 · 신정훈

조오섭 • 박홍근 • 윤관석

김남국 · 오영환 · 안규백

고영인 · 김민석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지방의회의 조직,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
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,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 속권한으로 되어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 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(안 제91조제1항).
- 나.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·연구·분석·평가하고,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만」(의안번호 제903호) 및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9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부분)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3조의2(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 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 -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5장제12절의 제목 "사무기구와 직원"을 "사무기구 등과 직원"으로 한다.

제91조의 제목 "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"을 "(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 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

- 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② 사무직원의 직급·정수·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례에 따라 사무처장·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5장제12절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2조의2(의정활동지원기구) ① 지방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·연구·분석·평가하고,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지원기구의 장과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정원·임면·직무·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.

제105조의 제목 "(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)"을 "(집행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소속"을 "집행기관 소속"으로 한다.

제112조제2항 중 "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"를 "등을 고려하여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	제22조(조례) ①
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	
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<u>다</u>	
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	<u>서 삭제></u>
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	
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	
<u> 어야 한다.</u>	
<u><신 설></u>	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
	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
	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
	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
	<u>수 없다.</u>
<u><신 설></u>	제33조의2(지방의회의원의 정책
	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
	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
	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
	<u>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
	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・직무
	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
	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제12절 <u>사무기구와 직원</u>	제12절 <u>사무기구 등과 직원</u>
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	제91조(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

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・사무국장 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 다.

- 1. 별정직공무원
-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
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

<신 설>

<신 설>

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등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 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·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임면 · 교육 · 훈련 · 복무 ·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> ② 사무직원의 직급·정수·직 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례에 따라 사무처장・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92조의2(의정활동지원기구) ① 지방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

<신 설>

제105조(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) 제105조(집행기관 소속 직원에 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·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• 교육훈련 • 복무 • 징 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(생략)
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 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 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~ ⑥ (생 략)

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. 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·연구·분석·평가하고,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 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지원 기구의 장과 직원은 지방공무원 으로 보하며, 정원·임면·직무·신 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.

한 임면권 등) --- 집행기관 소 (현행과 같음)

- -- 등을 고려하여 -----
- ③ ~ ⑥ (현행과 같음)